



영국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관련법의 검토

정보신청기관 : 법무연수원

I. 들어가는 말

영국에서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거법으로 우리나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2003년 반사회적 행동법(Anti-Social Behaviour Act 2003)과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1988(Road Traffic Act 1988),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하여 중대조직범죄대책법 2005(the Serious Organized Crime & Police Act 2005), 공공질서법안 1986(the Public Order Act 1986),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1994(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경찰개혁법 2002(the Police Reform Act 2002) 테러리즘법 2000(the Terrorism Act 2000)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범죄와무질서법 1998(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법들 중의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2003년도에 반사회적 행동을 제재하기 위한 ‘Respect and Responsibility-taking a stand against anti-social behaviour(존경과 책임-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06년 사회 내 질서확립과 주거안전보장을 목적으로 ‘Respect Action Plan(존경 실천계획)’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두 개의 정책은 관할지역의 가정들을 중심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제재함에 있어서 지역당국과 경찰에게 폭넓고 유연한 권한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최근, 국내에서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경범죄처벌과 집회및시위관한법률 등, 질서 바로잡기 위한 제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반사회적행동법 2003 (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반사회적행동법 2003(Anti-Social Behaviour Act 2003, 이하 ASBA 2003)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동을 규제함에 있어 경찰의 적절한 권한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제재하기 위하여 지역당국에게 권한을 수여하고 있다.

Part I(제1조-제11조)은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중에게 무질서와 심각한 불법방해를 야기하는 A등급의 약물의 사용, 제작 및 공급에 관여한 건물에 대하여 폐쇄통지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한다(제1조 2항). 이후, 경찰관은 치안법원에 폐쇄명령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치안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폐쇄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제2조 1항 및 2항). 명령기간(최대 3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출입이 허락될 수 없다(제2조 4항).

2008년 12월부터 발효된 Part 1A는 형사사법과 이민법안 2008(the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제118조에 의거하여 Schedule 20에 새로이 규정되었다. 제11A조부터 제11L조에 의하여, Part 1A의 폐쇄명령 또는 반사회적 행동 중지명령은 경찰 및 지역당국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무질서 및 방해를 야기한 건물에 대하여 최대 3개월의 폐쇄명령을 치안법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제

11A(1)항 및 제11B(5)항). 명령기간 동안 건물에 잔류하고 있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11D).

Part II(제12조-제17조)는 사회주택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을 제재하기 위하여 주택법안(the Housing Act 1996)을 수정함으로써 사회주택단체에 대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규제들이 채택되고 공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12조). 또한, 등록된 사회 임대인이 이웃들에게 방해와 불편을 야기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다(주택법안 1996 제218A조). 또한 주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해와 불편을 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제13조). 반사회적 행동중지명령은 타인에게 불법방해 또는 곤란을 주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임대인의 주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주택법안 1996 제153A조).

Part III(제18조-제29조)에서 학교나 지역에서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아동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체계로 발전시켰다. 범죄와 무질서법 1998(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8조의 양육명령을 수정하여(제18조 1항), 부모의 아동에 대한 통제 의무를 상세히 부과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학생이 정·퇴학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의무교육연령의 아동이 학생으로 등록된 학교에 규칙적으로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역교육당국 또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의 부모와 양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9조 1항 2항 및 3항). 양육계약에는 학생의 행동개선과 규칙적인 학교 출석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서의 조건을 준수할 의무(특히, 카운셀링 또는 지침프로그램 참여의무)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와 부모가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당국 또는 운영위원회가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도 포함된다(제19조 4항 5항 및 6항). 학생이 해당관계자의 퇴학규정에 의하여 퇴학을 받은 경우, 지역교육당국은 치안법원에 학생의 부모에 대한 양육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1항 및 2항).

Part IV(제30조-제36조)에 의거하여 경찰은 16세 이하의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무리의 존재나 행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위협, 방해 또는 공포를 받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해당지역성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경우에 그 무리를 해산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제30조 1항). 경찰은 본인이 지정한 시각까지 무리들을 해산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비거주자들에게 정해진 시각까지 해당지역에서 떠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비거주자들에 최대 24시간 동안 해당지역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제30조 제4항). 경찰은 밤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해당지역의 공공장소에서 16세 이하의 아동이 부모 또는 18세이상의 합당한 이의 보호하에 있지 않는 경

우, 해당 아동을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제30조 6항). 이는 재량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

Part V(제37조-39조)는 총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37조에 의하여 합법적인 승인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공중무기 또는 모방총포의 휴대를 금지한다. 동조 3항에 의하여 이는 체포가능한 범죄행위이다. 제38조는 총기소유가능연령을 14세에서 17세로 조정하였으며, 17세 이하의 누구에게라도 공중무기를 줄 경우 범죄행위가 된다. 또한 쉽게 무기전환 가능성이 있는 공중무기를 금지하고 있다(제39조).

Part VI(제40조-제56조)은 환경권과 관련하여 지역당국에게 환경권에 대한 권한을 넓게 부여하였다. 제40조에 의하면 지역당국은 공적 소음장해를 야기하는 건물에 대하여 최대 24시간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폐쇄명령 위반시에는 최대 3개월의 금고형과 £20,000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동조 4항 및 5항). 제48조에 의하여 지역당국은 거리시설물 및 교육기관 등의 소유자에게 최소 28일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래피티를 제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제48조 1항 2항 및 3항). 제54조에 의거하여 그래피티 행위에 의한 형사손해를 감소케 하기 위해 16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에어로솔 페인트를 판매할 경우 최고 £2,500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 R (*ex parte* W) v Commissioner of the Police of the Metropolis [2006] EWCA Civ 458; [2006] 3 All ER 458.

Part VII(제57조-제64조)은 공공질서와 불법 침해를 다루고 있다. 우선 공중집회에 관련하여 공공질서법 1986(the Public Order 1986) 제14조는 고위경찰간부에게 공중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집회의 인원수에 대하여 공공질서법 1986 제16조가 “20명 또는 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ASBA 2003 제57조는 “2명 또는 그 이상”으로 수정되었다. 제58조는 레ιβ 파티(Raves)에 관하여, 기존의 형사사법 및공공질서법 1994(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에서 100명 이상의 레ιβ 파티에만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확장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수로 이루어진 레ιβ 파티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둘째로 허가받지 않은 여행객들의 야영지를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경찰권을 규정하였다(제60조).

Part VIII(제65조-제84조)은 6미터 이상 높이의 사이프러스(Leyland cypress) 위험성에 관련하여 지역당국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위험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신고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Ⅲ. 도로교통법 1988(Road Traffic Act 1988)

영국의 도로교통은 도로교통법 1988(Road Traffic Act 1988, 이하 RTA 1998)을 중심으로

규제되고 있다. RTA 1988상의 주요 위반사항들을 중심으로 관련법규들을 살펴보겠다.

1. 위험한 운전

RTA 1988 제2조는 위험한 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있고, 이는 도로교통 범죄행위법 1988(Road Traffic Offenders Act 1988, 이하 RTOA 1988) 제33조에 의거하여 기소시 최대 2년의 금고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RTOA 1988 제34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박탈한다. RTOA 1988 제36조에 의하여 법원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강제적 운전면허 박탈을 명할 수 있다.

RTA 1988 제1조에서는 위험한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법 2003 (Criminal Justice Act 2003, 이하 CJA 2003) 제285조에 의거 최대14년의 금고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2007년 2월 27일자 발효; 이전 최대10년). 또한 의무적으로 최소 2년간의 운전면허박탈이 유지되며, 법원은 운전면허 재시험 통과시까지 강제적 운전면허박탈을 명령할 수 있다.

2. 부주의 운전

RAT 1988 제3조에서 차량운행시 부주의한 운전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로안전법 2006 (Road Safety Act 2006, 이하 RSA 2006)은 2000년

정부의 도로안전정책(Tomorrow's Roads-Safer for Everyone)의 일환으로 도로교통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RSA 2006 제23조는 RAT 1988 제3항의 부주의운전자에 대하여 동향 위반시 기존의 벌금형 4단계(£2,500)에서 5단계(£5,00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RTA 제3A조에 의하여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을 야기하였을 경우 CJA 2003 제285조에 의하여 최대 14년의 금고형에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2년간의 운전면허 박탈이 부과된다.

3. 음주 및 약물복용상태

음주 및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운전이 부적합한 자가 도로 또는 다른 공공장소 내에서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시도할 경우 범죄행위로 인정되며(RTA 1988 제4조1항),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추정될 경우 경찰관은 영장 없이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다(동법 동조 제6항). 단, 운전자가 음주 및 약물복용하에 그 시점에 운전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하에 법원은 운전자에 대한 상해와 차량손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동조 제3항 및 4항).

제4조 1항 위반시, 6개월의 금고형 또는 레벨 5에 해당하는 £5,000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12개월간의 의무적 운전면허 자격박탈이 이루어진다(ROTA 1988 제34조및36조). 그러

나 두 번의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면 ROTA 1988 제35조 2항 b에 의거하여 최소 3년간의 운전면허 자격박탈이 된다.

또한 RTA 1988 제5조에 의하여 규정치 이상의 체내알콜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시도하려는 운전자는 제4조위반시 처벌과 동일한 금고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RTA 1988 제7조 6항에 의거하여 호흡테스트가 요구된 경우 이를 거부할시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동법 제6조는 호흡테스트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도로내 또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음주상태가 충분히 의심이 가는 운전자가 운전 또는 운전시도를 하거나, 운전 중 차량이 교통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호흡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은 호흡테스트 결과, 호흡 및 혈중 알콜농도가 규정치 초과로 충분히 보이는 경우 또는 호흡테스트 거부시 체내혈중 알콜 농도가 추정되나 호흡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경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6조 5항). 동법 제7조 1항에 의하여 두 번의 호흡테스트 및 혈액, 소변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혈액 및 소변검사는 의학적으로 호흡테스트가 불가능하며, 장비불충분일 경우 이에 대한 요구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7조3항(a)(b)). 두 번의 호흡테스트 결과 중 낮은 수치의 결과를 채택하도록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기준: 100밀리리터의 호흡단위당 체내알콜농도 50마이크로그램).

4. 사고와 관련된 운전

RTA 1988 제170조는 도로상 사고와 관련하여

여 사고 후 반드시 정지할 것과 개인의 이름 및 주소와 차량소유주의 이름 및 주소, 차량식별번호를 알려줄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고당시 개인의 이름 및 주소, 차량소유주의 이름 및 주소와 차량식별번호를 상대방에게 주지 않았다면 경찰관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70조 제4항). 보고의무 위반시에는 6개월의 금고형 또는 £5,000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5. 운전자 신원확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운전자의 신원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RTA 1988 제172조에 의하여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레벨 3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0이 부과될 수 있다.

6. 보험

RTA 제143조는 제3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레벨 4에 해당하는 벌금 £2,500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RSA 2006 제21조에서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운전자격 박탈 중 또는 미보험가입 운전자에 의하여 야기된 사망의 경우에는 약식기소시 최대 12개월의 금고형과 레벨 5에 해당하는 £5,000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소시 최대 2년의 금고형과 £5,000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7. 제한속도 초과

제한속도규정은 도로교통규칙법 1984(the Road Traffic Regulation of Act 1984, 이하 RTRA 1984)의 제6조와 도로법 2007(the Highway Code 2007)의 규칙 124조에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 편도 일차선에서는 시속 60마일, 편도 이차선에서는 시속 70마일,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70마일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속도 위반시에는 RTRA 1984 제89조에 의거하여 레벨 3에 해당하는 £1,000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RSA 2006 제18조는 RTA 제41조하에 속도측정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반시 제한속도 초과규정의 위반과 동일한 정도의 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특별도로에서 위법행위가 발생시 벌금형이 가중될 수 있다.

8. 안전벨트 착용

RTA 1988 제14조에서는 성인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는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동의 동승을 규제하고 있다. 제14조 위반시 레벨 2에 해당하는 £500 벌금형이 부과되며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 아동이 앞좌석에 동승할 경우 레벨 2에 해당하는 £500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RSA 2006 제23조에 따라, RTA 1988 제15조 4항에 의거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아동이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할 경우, 이전의 £200의 벌금형이 레벨 2의 £500의 벌금형으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안전벨트 미착용 아동은 좌석의 위치에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9. 운전 중 핸드폰 사용

2003년 1일부터 도로차량규칙 2003(The Road Vehicles Regulations 2003)(제2조 construction and use)에 의하여 운전 중 핸드폰과 이와 유사한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고정벌금액 £30부터 기소시 최고 £1,000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9인승 이상의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시 £2,500의 벌금형). 또한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도로 위에서 운전시, 감독을 하는 자가 핸드폰 또는 유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RTA 1988 제42조에 의거하여 레벨 5에 해당하는 £5,000 벌금형에 부과될 수 있다.

2007년 이후로는 RSA 2006은 제26조에서 운전 중 차량의 시야확보에 방해를 주는 기기 또는 핸드폰과 이와 유사한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고정벌금액이 £60로 상향되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핸드폰의 핸드프리 사용에 관하여 위험도가 높음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핸드프리 핸드폰의 사용의 경우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핸드프리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RTA 1988 제

3조에 의한 부주의운전에 해당하여 위법소지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영국은 2010년 이후 10년도로안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20년까지 2004-8년 대비 도로 사망자수를 최소 33%까지 감소시키고, 도로 위 중대한 상해자들의 연간 수를 최소 33%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0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50%까지 중대한 상해자들의 수를 줄이고, 환경 및 건강, 교통혼잡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걷기와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며 보행자들과 자전거 운전자들의 위험을 2020년까지 최소 50% 감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 교육과 시험개선방안, 음주운전제한, 약물복용 상태의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추가, 과속과 부주의 운전자에 대한 고정벌금체제를 실행하고 있다.²⁾

I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공질서법안 1986(the Public Order Act 1986, 이하 POA 1986)의 제16조의 집회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집회는 전부 또는 일부 개방되어 있는 대중장소에서의 2인 또는 그 이상의 집회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고



2) Department for Transport UK, 'A Safer Way: Consultation on Making Britain's Roads the Safest in the World' <http://www.dft.gov.uk/roadsafetyconsultation>.

위경찰관은 공중집회에 관하여, 특히 집회 참여 인원수, 집회 장소과 지속시간 등에 관하여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고위경찰권이 심각한 공공무질서, 재산손상 및 지역생활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또한 집회의 목적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들의 권리여부와 관계없이 강요를 할 수 있는 위협감을 주려는 데 있다고 믿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1항 (a) 및 (b)). 고위경찰관은 집회를 구성하거나 참여하는 인원들에게 장소, 지속시간, 최대인원수 등에 관하여 고위경찰관의 판단 하에 무질서, 손상, 방해 및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지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12조 1항에 의한 공중행렬에 관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무질서를 방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3조 1항에 따라서 최대 3개월 동안 관련지역에서의 모든 공중행렬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형성한 관련행렬뿐만 아니라 모든 행렬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중행렬에 관하여 동법 제11조 1항은 개인 혹은 단체의 행동이나 생각에 관하여 반대 혹은 지지를 주장하거나, 운동 및 캠페인을 대중화시키기 위하여 또는 이벤트를 시작하기 위한 의도 하에 공중행렬을 열기 위해서는 공중행렬에 관한 어떠한 예비통지가 합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 공중장소에서의 관례적으로 이루어지

거나 장례감독관이 주관하는 일반적 영업 중에 일어나는 장례행렬은 서면통지에 예외로 한다. 통지는 행렬의 날짜, 시작 시간, 예정된 노선 및 행렬을 주관하는 이(또는 다수)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동조 3항).

집회에 관한 주요 법안으로는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1994(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도 들 수 있다. 제68조에서는 공공지역 및 사유점유지에서 위협, 혼란 및 방해의 의도가 있다면 불법침해에 대한 가중처벌로 최대 3개월 금고형 또는 레벨 4에 해당하는 £ 2,500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한다. 동법 제60조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정지 및 수색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정지 및 수색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는 동조 8항에 의거하여 최대 1개월의 금고형 또는 최대 레벨 3 £1,00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이밖에 중대조직범죄대책법 2005(the Serious Organized Crime & Police Act 2005)는 지정지역(소유자의 허락 없이 토지 및 건물 내)에 들어갈 경우 불법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최대 1년의 구금형 및 £5000의 벌금형이 부과된다(제128조). 또한 국회의 1킬로미터 내에 승인받지 않은 시위와 운동에 관하여 경찰에게 제한권을 허락한다. 위반시 최대 3개월의 금고형 및 £ 2500의 벌금형이 부과된다(제132조). 제145조에 의하면 동물연구단체의 손실목적으로 연구활동의 방해 등을 통하여, 동물연구단체의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년의 금고형 및 £5,000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개혁법 2002(the Police Reform Act 2002)는 제50조에 의거하여 반사회적 태도로 여겨지는 행동을 하는 이의 이름과 주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였다. 경찰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테러리즘법 2000(the Terrorism Act 2000)의 제44조에 의하여 경찰은 수색에 대한 어떠한 근거 없이 시위자료에 대하여 공공장소에 있는 이를 수색할 수 있다. 경찰의 수색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금고형과 £5,000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V.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이하 CDA 1998)은 반사회적 행동명령, 성범죄행위자에 대한 명령, 양육명령,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관하여 지역당국의 책임감을 더욱 늘렸다. 또한, 인종적으로 가중된 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도입하였다. 아래에서는 주요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반사회적 행동 명령

CDA 1998 제1조에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본인의 가족 이외에 타인을 상대로 하여 학대, 공포, 고통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추후의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관할 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성범죄행위자에 대한 명령

CDA 1998은 구체적으로 성범죄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였다. 제2조에 의하여 경찰관은 성범죄행위자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경우, 성범죄행위자에 대한 제재명령을 치안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제2조 1항 및 2항). 이러한 명령은 변경 또는 취소가 없는 한 최소 5년 이상 실행될 수 있다(동조 5항).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범죄행위자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약식 기소시에는 최대 6개월 금고형 및 벌금을, 기소시에는 최대 5년 금고형 및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제3조는 제2조의 적용대상인 성범죄행위자의 정의에 대하여 밝혔다. 성범죄행위자는 성범죄행위자법 1997(Sex Offenders Act 1997)의 파트 I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자를 일컬으며,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죄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어야 하거나 국외에서 국내의 성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았어야 한다(제3조 1항).

3. 양육명령

청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양육명령을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양육명령은 반사회적 행동 또는

성범죄행위자에 대한 제제명령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 교육법 1996 (Education Act 1996) 제443조 또는 제444조에 의거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제8조 1항 2항). 양육명령은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으며(동조 4항), 부모의 종교적 믿음과 부모의 일상적인 직장근무시간과 교육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제9조 4항). 합리적 이유 없이 양육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최대 레벨 3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된다(동조 7항).

4. 인종적 또는 종교적으로 가중한 범죄행위

파트 II에 해당하는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인종적 또는 종교적으로 가중한 범죄행위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에 의하여 “인종적으로 가중한(Racially aggravated)”은 범죄실행 당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죄피해자가 인종적 그룹의 회원(또는 회원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라는 이유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냈을 경우 또는 범죄가 전부 또는 일부 인종적 그룹에 대한 적대심으로 동기부여 받았을 경우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본래, 이 조항은 종교적 그룹의 회원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나, 반테러리즘, 범죄 및 안전법 2001(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제39조 “종교적으로 가중된 범죄행위(Religiously aggravated offences)”에 의하여 수정포함되었다.

제29조 1항(a)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범죄법 1861(Offences Against The Persons Act 1861) 제20조에 해당하는 악의적 상해 및 중대한 신체 상해가 제28조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범죄행위로 된다. 동조 1항(b)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를 규정하였으며, (c)항에서는 폭행 혐의를 규정하였다. 동조 2항에 의거하여 동조 1항(a)와 (b)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약식기소시 최대 6개월의 금고형 또는 규정최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기소시 최대 7년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조 1항 (c)항의 경우 약식기소시에는 전항의 처벌과 같으며, 기소시에는 최대 10년의 금고형 및 벌금형이 부과된다.

제30조는 형사손해구제법 1971(Criminal Damage Act 1971)의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제28조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종적 가중형사손해로 하여 약식기소시 최대 6개월의 금고형 및 규정최대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벌금형과 기소시 최대 14년의 금고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1항 및 2항).

이어, 제31조는 POA 1986의 제4조에 해당되는 두려움 또는 폭력의 도발에 해당하는 범죄와 (동조 1항(a)), POA 1986 제4A조에 해당되는 고의적 학대, 공포 및 고통을 일으키는 범죄를 행한 경우(동조 1항(b)), 약식기소시 최대 6개월의 금고형 및 규정최대를 넘지 않는 벌금형이 부과되며, 기소시 최대 2년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동조 4항). 또한 POA 1986 제5조의

학대, 공포 및 고통(동조 1항(c))을 일으키는 범죄를 행한 경우를 약식기소시 최대 레벨 4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된다(동조 5항). 동조 2항 및 3항에 의거하여 경찰관은 동조 1항 (a) 및 (b)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 경우 체포권을 부여받았으나, 중대조직범죄대책법 2005(the Serious Organized Crime & Police Act 2005) 제174조에 의거하여 파트 II의 Schedule 17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32조는 괴롭힘방지법 1997(Harassment Act 1997)의 제2조에 해당하는 학대를 저지를 경우 약식기소시 최대 6개월의 금고형 및 규정최대치 내의 벌금형을, 기소시 최대 2년의 금고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동조 1항(a) 및 3항), 괴롭힘방지법 1997의 제4조에 해당되는 타인에게 폭력의 두려움에 처하도록 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소시 최대 7년의 금고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동조 1항(a)의 위반사와 동일하다(동조 1항 (b) 및 4항).

5. 지역당국의 책임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당국이 관할 지역 내에서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도록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당국은 경찰당국, 보건당국 및 장관이 당시 지정한 기관 및 인사와의 협력하에 일할 것이 요구된다(제5조 2항).

6. 기타

제34조에서 10세 이상의 아동이 범죄승낙능력이 없음에 대한 추정을 폐지하였다. 제36조는 반역과 해적행위로 인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VI.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범질서 재확립을 위하여 여러 법안들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생활을 중심으로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존경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양육명령, 소음 등 환경규제권 등 지역당국이 지역 내 가정과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당국의 권한을 확장시켰다. 또한, 도로교통에 관하여 10년 단위의 국가계획을 통해 새로운 제재도입 및 기존의 규제에 불필요하거나 가중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수정을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서는 경찰권의 확대를 통하여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당국과 경찰권의 확대는 유럽인권법 차원에서 갈등야기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제도적 정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진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국내 범질서 정비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김 정 은

(영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